A Guide to Refugee Appeal Process





난민 이의신청 절차 안내

- 이 안내문은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이 이의 신청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안내문에 적힌 모든 내용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기 전, 이 안내문의 'IV.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과 '붙임. 이의신청서 작성 예시'를 읽고 이해한 후 작성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이 안내문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www.immigration.go.kr) '뉴스·공지 > 업무공지' 게시판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www.hikorea.go.kr) '뉴스·공지 > 공지사항' 게시판

CONTENTS

목차

00 I. 난민 이의신청 개요

- 01 1. 난민 이의신청이란?
- 01 2. 어떤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 02 3.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05 4. 이의신청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06 5. 이의신청을 했는데도 난민인정을 받지 못하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다음 절차가 있나요?

07 II. 이의신청 방법

- 08 1. 이의신청을 하려면 어떤 자료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 09 2. 미성년 자녀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부모가 대리할 수 있나요?
- 09 3. 이의신청 시 제출한 자료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 09 4. 제출한 자료의 열람·복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0 5. 이의신청을 할 때나, 제출한 자료의 열람·복사 신청을 할 때에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11 III. 이의신청인의 권리와 의무

- 12 1. 변호사 조력
- 12 2. 국내 체류
- 13 3. 추가 자료 제출
- 14 4. 구두 의견 진술
- 15 5. 이의신청 철회
- 15 6. 개인정보 보호
- 15 7. 체류지 변경 신고
- 16 8. 연락처, 이메일 주소 변경 시 통보

17 IV.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

- 18 1. 유의사항
- 21 2. 작성방법
- 21 (1) 이의신청인 인적사항
- 22 (2) 이의신청 대상
- 24 (3) 이의신청 사유
- 25 (4) 소명 자료 제출
- 29 (5) 구두 의견 진술 필요 여부
- 31 (6)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통지, 통보 및 송달
- 32 (7) 서약
- 35 (8) 확인 사항
- 35 3. 서명 및 제출

36 붙임. 이의신청서 작성 예시

난민 이의신청 개요

I . 난민 이의신청 개요

1. 난민 이의신청이란?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난민불인정결정 등 처분에 대하여 상급기관인 법무부 장관에게 권리구제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 행정소송보다 간편하고 저비용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난민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난민위원회에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난민불인정결정 등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으나,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난민불인정결정 등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난민법」제21조 제2항

2. 어떤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난민 신청을 하여 난민불인정결정을 받거나(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경우 포함), 난민인정결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대상

- 난민불인정결정
 - 난민인정 신청에 대하여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

■ 난민인정결정 취소

- 난민인정결정이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에 따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 난민인정결정을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처분

■ 나민인정결정 철회

- 난민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이 「난민법」제2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난민인정결정의 효력을 장래에 중지하는 처분

■ 난민인정결정 철회 사유

- 난민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고 있는 경우, 난민인정 결정의 주된 근거가 된 사유가 소멸하여 더 이상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의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은 이 안내문의 17~35쪽을, 이의신청서 작성 예시는 36~4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난민불인정결정 또는 난민인정 취소·철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난민법」 제21조 제1항

■ 기간을 계산할 때, 첫째 날은 산입하지 않으며,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57조, 제161조

■ 난민불인정결정 또는 난민인정 취소·철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적법하지 않은 이의신청으로 각하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난민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이의신청 제기기간 계산 예시

■ 예시1: 기간의 마지막 날(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째)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아닌 경우 ⇒ 30일 째가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 가능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erday
	• 난민불인정	결정 통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4	5	6
• 30일째						
이의신청 가능						

• 예시2: 기간의 마지막 날(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째)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 30일 째가 되는 날의 다음날까지 이의신청 가능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erday
			난민불인정결	[ੵ] 정 통지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4	5	6
• 30일째 (공휴일)						
O	의신청 가	占				

4. 이의신청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이의신청서가 충실히 작성되었는지 확인 후 신청인에게 이의신청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법무부의 난민조사관이 이의신청에 대해 사실조사를 한 후 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법무부장관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합니다.

♡ 「난민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 법무부장관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난민인정증명서 또는 이의신청 기각·각하결정통지서를 교부합니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화 또는 우편으로 난민인정증명서 또는 이의신청 기각·각하결정통지서를 받기 위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통상적으로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며, 2020년에는 평균적으로 약 10.7개월 소요되었습니다.

난민 이의신청 절차	의 흐름도	
■ 이의신청	이의신청 접수 및 접수증 발급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 난민조사관 지정	이의신청 접수일 순으로 지정 원칙	 법무부
■ 사실조사	전화, 이메일, 면담(필요 시) 등	 법무부
■ 난민위원회 심의	신청인 출석 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필요 시)	 난민위원회
■ 법무부장관 결정	난민인정 또는 기각, 각하 결정	 법무부
▼ 결정 통지	신청인 출석 요구 ➡ 결정 통지서 교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5. 이의신청을 했는데도 난민인정을 받지 못하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다음 절차가 있나요?

- 이의신청에서도 난민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원래의 처분인 난민불인정결정 또는 난민인정 취소·철회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이의신청 기각 또는 각하 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이의신청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제19조

■ 「난민법 시행령」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경우 포함), 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난민불인정 결정 또는 난민인정 취소・철회 처분에 대하여 해당 처분을 한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법」제20조 제1항

- 다만, 「난민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의신청 각하 결정을 받은 경우, 각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난민불인정결정 또는 난민인정 취소・철회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지 않아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기각 또는 각하 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각 또는 각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II. 이의신청 방법

1. 이의신청을 하려면 어떤 자료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 신청인은 이의신청서(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한 후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본국의 판결문, 사진, 동영상, 언론보도 등)와 함께 가까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위치와 연락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www.immigration.go.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개 > 소속기관'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난민인정 신청 또는 심사(또는 난민인정 취소·철회 사실조사) 과정에서 이미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한 자료는 이의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과정에서 확인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의신청서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서식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거나,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뉴스·공지 > 민원서식' 게시판
-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접수하는 공무원에게 신청인 본인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시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미성년 자녀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부모가 대리할 수 있나요?

- 이의신청은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나,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이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신청인과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의신청 시 제출한 자료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이의신청 시 제출한 자료는 돌려받을 수 없으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난민법」제16조 제1항

4. 제출한 자료의 열람·복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인은 열람·복사 신청서(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한 후 가까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열람·복사 신청서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서식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거나,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뉴스・공지 > 민원서식' 게시판
- 열람·복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접수하는 공무원에게 신청인 본인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시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이의신청을 할 때나, 제출한 자료의 열람·복사 신청을 할 때에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이의신청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 열람 또는 복사 신청 시 수수료는 열람의 경우 1회당 500원, 복사는 1매당 50원이며,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난민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

■ 수입인지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내에 있는 수입인지 판매 창구 또는 가까운 우체국, 은행, 농협은행을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www.erevenuestamp.or.kr)에서 온라인으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사정에 따라 수입인지 판매 창구를 운영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에 전화(외국인 종합안내센터: 국번 없이 ☎ 1345)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II. 이의신청인의 권리와 의무

1. 변호사 조력

- 신청인은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 심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이의신청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 신청서의 '7. 서약'의 '대리인, 변호사, 통역인·번역인 등 서약'을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방법은 이 안내문의 33~34쪽을, 작성 예시는 4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국내 체류

- 신청인은 이의신청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체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난민불인정결정 또는 난민인정 취소・철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체류 허가가 반드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기타(G-1) 체류자격 또는 기존 다른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신청인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출입국관리법」제25조, 제94조

체류기간 연장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 신청 장소
 - 신청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 제출 서류
 - 통합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뉴스・공지 > 민원서식'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거나,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
 - 외국인등록증, 여권
 - 이의신청 접수증
 - ✓ 이의신청 접수 시 접수 담당 공무원이 발급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수수료 6만원
 - ✓ 수입인지로 납부(수입인지 구매 방법은 이 안내문의 10쪽 참고)

3. 추가 자료 제출

- 신청인은 이의신청 사유를 보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자료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 시에는 제출할 수 없으나 추후 제출할 예정인 자료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의 '4. 소명 자료 제출'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 방법은 이 안내문의 25~28쪽을, 작성 예시는 39~4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내용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어나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녹음·녹화)된 자료는 한국어나 영어로 번역하여 원본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난민위원회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사실조사를 수행하는 난민조사관은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그 내용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한국어나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녹음·녹화)된 자료는 한국어나 영어로 번역하여 원본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난민위원회 또는 난민조사관이 정한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자료 없이 이의신청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4. 구두 의견 진술

- 신청인이 난민위원회의 회의(비공개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이의신청과 관련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의신청서의 '5. 구두 의견 진술 필요 여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 방법은 이 안내문의 29~30쪽을, 작성 예시는 4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난민위원회는 이의신청 사유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구두 의견 진술 필요 이유 등을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신청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난민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 신청인이 이의신청서의 '5. 구두 의견 진술 필요 여부'에 구두 의견 진술이 필요하다고 표시한 경우에도, 난민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진술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그리고 면담, 서면,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한 신청인에 대한 조사 결과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인의 구두 의견 진술을 듣지 않고 심의할 수 있습니다.
- 난민위원회는 모든 신청인의 구두 의견 진술을 듣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제출 자료가 난민인정 여부의 중요한 쟁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쟁점과 관련한 의문 사항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는 경우와 같이 구두 의견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구두 의견 진술을 듣습니다.
- 난민위원회는 신청인의 구두 의견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정과 장소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출석을 요구하며, 신청인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난민위원회는 신청인의 구두 의견 진술을 듣지 않고 심의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구두 의견 진술을 하기 위해 난민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경우, 신청인은 이의신청 사유와 관련한 의견을 회의에 참석한 난민위원들에게 진술할 수 있으며, 난민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게 됩니다.
- 난민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신청인이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 난민위원회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합니다.

5. 이의신청 철회

■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철회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서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철회한 경우 이의신청 절차는 종료되며, 신청인에게 별도로 통지하지는 않습니다.

6. 개인정보 보호

■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출신국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난민법」제17조 제3항

■ 신청인이 제공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다른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난민법」에 따른 업무에만 활용됩니다.

7. 체류지 변경 신고

■ 신청인이 체류지를 변경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 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제36조 제1항

- 체류지 변경 신고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나, 체류지를 변경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경우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민원신청>전자민원' 게시판
- 기간의 계산 방법은 이 안내문의 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이 변경된 체류지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출입국관리법」제98조

8. 연락처, 이메일 주소 변경 시 통보

- 신청인이 연락처 또는 이메일 주소를 변경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 없이 ☎ 1345)로 변경된 연락처 또는 이메일 주소를 알려야 합니다.
- 신청인이 변경된 연락처 또는 이메일 주소를 알리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한 난민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 또는 난민위원회에서 신청인의 구두 의견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통지하는 출석 요구 등 이의신청과 관련한 중요한 연락을 받지 못하여, 신청인의 자료 또는 진술 없이 이의신청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IV.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

1. 유의사항

(1) '유의사항' 을 읽고 서명하세요.

■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 신청서의 1쪽과 2쪽에 있는 '유의사항'을 읽고 이해한 후 신청인의 성명을 작성(영어로 작성할 경우 대문자로 작성)하고 '서명 또는 인' 란에 서명을 하거나 날인을 해야 합니다.

작성 예시

◆ 나는 위 "유의사항"을 읽고 모두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I hereby confirm that I have read and understood the Note above.

이의신청인 Applicant's Name

HONG GIL DONG

HONG GIL DO (HE 인)

(2)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하세요.

■ 신청인은 신청서 각 항목의 하단에 적힌 작성방법 등을 읽고 이해한 후,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며, 신청인에게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아니오'에 표시해야 합니다.

(3)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하세요.

- 신청서는 한국어나 영어로 명확하게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하며, 한국어나 영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한 경우에는 한국어나 영어로 번역하여 원본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이 글을 쓸 줄 모르거나 장애가 있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하는 공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가급적 컴퓨터로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하세요.

-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급적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신청서 서식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로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12폰트 이상의 글자 크기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뉴스・공지 > 민원서식' 게시판

(5) 제출 자료도 한국어나 영어로 번역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신청서 이외의 제출 자료(음성·동영상 파일 포함)가 한국어나 영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녹음·녹화)된 경우에는 한국어나 영어로 번역하여 원본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모든 제출 자료(문서, 사진 자료 포함)는 명확하게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여야 합니다.
- 한국어나 영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녹음·녹화)된 신청서 또는 제출 자료를 한국어나 영어로 번역하여 제출하는 경우, 신청서의 '7. 서약'의 '대리인, 변호사, 통역인·번역인 등 서약'을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방법은 이 안내문의 33~34쪽을, 작성 예시는 4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가족이 함께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세요.

■ 가족 구성원(부모, 배우자, 미성년 자녀 등)이 함께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7) 미성년자의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세요.

■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이의신청을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대리하는 경우 그 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하며, 이 경우 신청서의 '7. 서약'의 '대리인, 변호사, 통역인・번역인 등 서약'을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방법은 이 안내문의 33~34쪽을, 작성 예시는 4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은 신청서의 모든 질문에 거짓 없이 답해야 합니다.

■ 신청서의 모든 질문에 거짓 없이 답해야 하고,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면 이의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며, 난민으로 인정된 후에 그 사실이 밝혀지면 난민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난민법」제22조 제1항

■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으로 인정되거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난민법」제47조

2. 작성방법

(1) 이의신청인 인적사항 <작성 예시 37쪽 참고>

1. 이의신청인 인적사항 Applicant's Personal Information				
성(姓) Family Name	명(名) Given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국적 Nationality		연락처 Contact Information		
전자우편 E-mail				
대한민국 내 체류지 Residence Address in Korea				

- 이의신청인 인적사항 란을 영어로 작성할 경우 대문자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난민인정신청 이후 연락처, 이메일 주소, 대한민국 내 체류지 등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의신청서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변경된 인적사항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이의신청 대상 <작성 예시 37쪽 참고>

2. 이의신청 대상 Subject of Appeal 0 [] 난민불인정결정 처분 통지를 0 Non-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받은 날 (연/월/일) 처분 [] 난민인정 취소 Date when you Cancellation of refugee status 내용 were notified of the Disposition | [] 난민인정 철회 disposition Withdrawal of refugee status (yyyy/mm/dd)

- '❷처분 통지를 받은 날'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또는 난민인정 취소·철회 통지서)를 받은 일자를 기재합니다.
- '❷처분 통지를 받은 날'은 통상적으로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또는 난민인정 취소·철회 통지서)의 '발급일'과 동일하지만,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로 통지서를 받은 일자를 기재합니다.





- 신청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거나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또는 난민인정 취소·철회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 및 인터넷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송달합니다. 이 경우, '❷처분 통지를 받은 날'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이며, 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 공고에서 정한 시기입니다.
 -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

(3) 이의신청 사유 <작성 예시 38~39쪽 참고>

3. 이의신청 사유 Grounds for Appeal

■ 난민불인정결정(또는 난민인정 취소·철회)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그와 같이 생각하는 이유를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예시 1) 난민불인정결정(또는 난민인정 취소·철회) 사유에 이의가 있는 경우

■ 난민불인정결정(또는 난민인정 취소·철회) 사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또는 난민인정 취소·철회 통지서)의 '사유'에 적힌 내용 중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작성합니다.

예시 2) 난민면접(또는 난민인정 취소・철회 사실조사) 절차에 이의가 있는 경우

■ 난민면접(또는 난민인정 취소·철회 사실조사) 절차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난민면접조서에 적힌 내용 중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작성합니다.

예시 3) 난민인정신청 및 난민인정심사(또는 난민인정 취소·철회 사실조사) 과정에서 주장하지 못한 내용이 있는 경우

■ 난민면접(또는 난민인정 취소·철회 사실조사) 이전에 발생한 상황 또는 사건과 관련하여 난민인정신청 및 난민인정심사(또는 난민인정 취소·철회 사실조사) 과정에서 주장하지 못한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과 주장하지 못한 사유를 작성합니다.

예시 4) 난민면접(또는 난민인정 취소·철회 사실조사) 이후 출신국의 정세가 악화되었거나 새로운 박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

- 난민면접(또는 난민인정 취소·철회 사실조사) 이후, 출신국의 악화된 상황이나 신청인의 난민인정신청 사유와 관련한 활동으로 인해 새로운 박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또는 발생하게 될 것이 두려운 경우), 해당 내용을 작성합니다.
- 위 예시 이외에도 난민불인정결정(또는 난민인정 취소·철회)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이유를 작성합니다.
- 단, 난민인정신청 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했던 난민인정신청서에 이미 기재한 내용은 이의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과정에서 확인하고 있으므로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소명 자료 제출 <작성 예시 39~41쪽 참고>

4.1. 소명 자료 제출 여부 <작성 예시 39쪽 참고>

4. 소명 자료 제출 Submission of Supporting Materials

4.1 귀하는 본 이의신청서와 함께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하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출할 예정입니까?

Are you providing or going to provide any new material(s) in support of your appeal?

- [] 예 Yes [] 아니오 No
- \rightarrow "예"로 답한 경우 4.2에서 4.4까지를 작성하세요. If "yes", complete from 4.2 to 4.4.
- \rightarrow "아니오"로 답한 경우 "5. 구두 의견 진술 필요 여부"로 이동하세요. If "no", go to "5. Oral Hearing".
- '4.1'에서는 앞 문항 '3. 이의신청 사유'에서 작성한 내용을 소명하기 위해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새로운 자료가 있거나,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는 없으나 추후 제출할 예정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선택('✓' 표시)합니다.
- 난민인정신청 또는 난민인정심사(또는 난민인정 취소·철회 사실조사) 과정에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이미 제출한 자료는 이의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과정에서 확인하고 있으므로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4.2. 소명 자료 목록 <작성 예시 40쪽 참고>

4.2 제출하거나 제출 예정인 소명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세요. List the supporting material(s) you are providing or going to provide.

① 연번 No.	자료 유형 (판결문,사진,동영상, 언론보도 등) Type (Judicial decisions, photos, videos, news articles, etc.)	❹ 작성자 또는 발급자(발급기관) Written by or issued by	작성일자 또는 발급일자(연/월/일) ※현재제출할수없는자료인 경우,제출예정시기 Reporting date or issue date(yyyy/mm/dd) ※ State earliest possible date of submission, if not currently available.	⑤ 내용 요약 Summary of content

- '4.2'에서는 앞 문항 '4.1'에서 '예'로 답한 경우, 제출하거나 제출 예정인 자료의 목록을 작성합니다.
- '●연번'은 1, 2, 3, 4, · · · 순번대로 작성합니다.
- '❷자료 유형'은 판결문, 사진, 동영상, 언론보도 등 해당 자료의 유형을 작성합니다.
- '❸작성자 또는 발급자(발급기관)'는 해당 자료를 작성 또는 발급한 개인, 기관, 단체 등의 이름과 명칭을 작성합니다.
- '④작성일자 또는 발급일자'는 해당 자료를 작성 또는 발급한 일자(연/월/일)를 작성합니다. 현재 제출할 수 없으나 제출 예정인 자료는 제출 예정일자(연/월/일)를 작성합니다.
- '⑤내용 요약'은 해당 자료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4.3. 이의신청 사유와의 관련성 <작성 예시 40쪽 참고>

4.3 앞 문항 4.2에서 적은 각각의 소명 자료가 이의신청 사유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상세히 작성하세요.				
Please describe in detail how each material in 4.2 relates to the grounds for your appeal.				

• '4.3'에서는 앞 문항 4.2에서 작성한 각각의 자료가 '3. 이의신청 사유'에서 작성한 내용 중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증명하는 자료인지 작성합니다.

4.4. 소명 자료의 취득 경위와 사전에 제출하지 못한 사유 <작성 예시 41쪽 참고>

그 취득 경위와 난민인 사유를 상세히 작성하	각각의 소명 자료를 누구로부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취득하였는지 정 신청 또는 심사, 난민인정 취소ㆍ철회 사실조사 시 제출하지 못한 세요. 소명 자료인 경우 각각의 자료에 대해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를 상세히
material in 4.2 and application for refugor investigation con Explain why you ar	detail from whom, when, where, how you obtained each why you were unable to provide it at the time of your gee status or during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s neerning cancellation/withdrawal of refugee status. The not able to provide each of the material(s), if it is currently
unavailable.	

- '4.4'에서는 앞 문항 '4.2'에서 작성한 각각의 자료를 누구로부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취득하였는지 그 취득 경위와 난민인정신청 또는 난민인정심사(또는 난민인정 취소·철회 사실조사)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를 작성합니다.
- 현재 제출할 수 없으나 제출 예정인 각각의 자료에 대해서는 현재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와 언제, 어떻게 취득하여 제출할 예정인지 그 취득 계획을 작성합니다.

(5) **구두 의견 진술 필요 여부** <작성 예시 42쪽 참고>

5.1. 구두 의견 진술 필요 여부 <작성 예시 42쪽 참고>

5. 구두 의견 진술 필요 여부 Oral Hearing

5.1 귀하는 난민위원회의 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이의신청과 관련한 의견을 진술 (이하 "구두의견진술"이라 함)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Do you need to appear at the Refugee Committee's meeting to make statements

regarding your appeal (hereinafter referred to as "oral hearing")?

[]예Yes []아니오No

 \rightarrow "예"로 답한 경우 5.2를 작성하세요. If "yes", complete 5.2.

- '5.1'에서는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난민위원회의 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이의신청과 관련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선택(' ✓ ' 표시)합니다.
- 구두 의견 진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안내문의 14~1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2. 구두 의견 진술 필요 이유 <작성 예시 42쪽 참고>

5.2 구두의견진술이 필요한 이유를 상세히 작성하세요. Please describe why you need an oral hearing.	

- '5.2'에서는 앞 문항 '5.1'에서 '예'로 답한 경우, 구두 의견 진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앞 문항 '3. 이의신청 사유'와 '4. 소명자료 제출'에서 작성한 신청인의 주장과 제출 자료 중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과정에서 반영된다면 난민인정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핵심적인 주장과 자료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 이러한 주장과 제출 자료는 난민불인정결정(또는 난민인정 취소·철회)의 근거가 된 부분 중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당함을 소명하는지
 - 난민불인정결정(또는 난민인정 취소·철회)을 할 때에는 이러한 주장과 제출 자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난민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경우 어떤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지

(6)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통지, 통보 및 송달 <작성 예시 42쪽 참고>

6.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통지, 통보 및 송달 Notice, Notification and Service through an Electronic Civil Petition Window

이의신청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 이의신청 결정통지서 등 이의신청과 관련한 각종 서류에 대한 통지, 통보 및 송달을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받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Do you agree to receive notices, notifications and services through an Electronic Civil Petition Window regarding your appeal (examples: Notice on Extension of Review Period of Appeal, notice of decision on your appeal, etc.)?

[] []	l Yes	[]	아	·L	오	No

- 신청인이 통지, 통보 또는 송달받는 이의신청과 관련된 서류를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방문하여 직접 받지 않고, 인터넷에 설치·운영하는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온라인으로 받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선택('√'표시)합니다.
- 이의신청 관련 서류의 통지, 통보 또는 송달을 위한 전자민원창구는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신청인에게 통지, 통보 또는 송달하는 이의신청 관련 서류

- 이의신청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
 -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하지 못할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하였음을 통지하는 서류
- 난민인정증명서
 -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난민인정결정을 하였음을 통보하는 서류
- 이의신청 기각·각하결정통지서
 -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거나 적법하지 않은 경우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 하였음을 통보하는 서류

(7) 서약 <작성 예시 43~44쪽 참고>

◆ 이의신청인 본인 서약 <작성 예시 43쪽 참고>

7. 서약 Declaration

◆ 이의신청인 본인 서약 Declaration by the applicant

나는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I declare that:

▶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으로 인정되거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경우 「난민법」 제47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난민으로 인정된 후에도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I understand that if I become a recognized refugee or obtain a humanitarian stay permit after submitting false documents, making false statements, or concealing facts, I may be subjected to punish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47 of the Refugee Act, and that if such fact is found after I have been recognized as a refugee, my refugee status may be cancel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2(1) of the Refugee Act.

▶이 신청서에 적힌 유의사항과 모든 질문을 완전히 이해한 후 관련 질문에 빠짐없이 사실대로 작성하였습니다.

I filled out all of the information and questions in this form and affirm that the provided information is complete, correct and current in every detail.



■ 신청인은 '이의신청인 본인 서약'을 읽고 이해한 후 성명을 작성(영어로 작성할 경우 대문자로 작성)하고 '서명 또는 인' 란에 서명을 하거나 날인하고, 서약일자를 기재합니다.

•	대리인,	변호사,	통역인·번역인 등 서약	<작성 예시	44쪽 참고>
---	------	------	--------------	--------	---------

◆ 대리인, 변호사, 통역인 · 변역인 등 서약 Declaration by representative, attorney, interpreter · translator, etc.						
이의신청인과 어떤 관계인지 표시하세요. I have assisted (acted on behalf of the applicant) in completing this form as :						
[] 부 또는 모 Father or Mother [] 배우자 Spouse [] 형제·자매 Brother(s)·Siste [] 변호사 Attorney [] 통역인·번역인 Interpreter (translator)						
[] 그 밖의 사람 (이의신청인과의 관계:) Other (Give details of relationship:					
성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연락처 Contact Information	전자우편 E-mail					
국적 Nationality	소속(해당될 경우에만 기재) Organization (If applicable)					
대한민국 내 주소 또는 체류지 Residence Address in Korea						

본인은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I declare that:

▶ 나는 이의신청인 **①**(*이의신청인 이름 기재*) 의 요청으로 이의신청을 대리·조력하거나 이의신청서 또는 제출 자료의 통역·번역 등을 하였고, 이의신청인이 신청서의 질문을 완전히 이해한 후 답변한 사실과 작성된 내용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고 위 서약에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며,

I certify that I have assisted/acted on behalf of the applicant in filing this application form or interpreted/ translated this application form or supporting materials at the request of \bigcirc *Write applicant's name*), and that he/she has fully understood the content of this form, given answers, and approved them before signing the declaration above.

▶ 이의신청인의 동의 없이 이의신청인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를 출신국에 제공할 경우 「난민법」 제4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I understand that if I disclose any personal information, pictures, etc. by which the applicant is specifically identifiable or divulge such things to other persons or provide the country of origin with any information regarding the appeal without the consent of the applicant, I may be subjected to punish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47 of the Refugee Act.

	0	성명 Name	(서명 또는 인) (Signature)
일자(연/월/일) Date (yyyy/mm/dd)		일자(연/월/일) Date (yyyy/mm/dd)		

-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대리 또는 조력하거나, 이의신청서 또는 제출 자료의 통역·번역을 한 대리인, 변호사, 통역인·번역인 등이 있는 경우, '대리인, 변호사, 통역인·번역인 등 서약'을 작성합니다.
- 대리인, 변호사, 통역인·번역인 등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은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인과의 관계를 선택(' ✓ '표시) 또는 직접 작성('그 밖의 사람'일 경우)하고 대리인, 변호사, 통역인·번역인 등의 인적사항을 작성(영어로 작성할 경우 대문자로 작성)합니다.
- 대리인, 변호사, 통역인·번역인 등은 서약을 읽고 이해한 후 ①에는 신청인의 성명을, ②에는 대리인, 변호사, 통역인·번역인 등의 성명을 작성(영어로 작성할 경우 대문자로 작성)하고 '서명 또는 인' 란에 서명을 하거나 날인하고, 서약일자를 기재합니다.
- 대리인, 변호사, 통역인·번역인 등이 여러 명일 경우, '7. 서약'의 '대리인, 변호사, 통역인·번역인 등 서약'을 인원 수 만큼 작성하여 별도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8) 확인 사항 <작성 예시 45쪽 참고>

8. 확인 사항 Checklist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Please check the following.

- [] 신청서 각 항목에 적힌 작성방법 등을 확인하고 모든 관련 항목을 기재하였습니다. I have read note and instructions in the form and completed all relevant parts.
- [] 신청서를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거나, 번역본(한국어 또는 영어)을 첨부하였습니다. The application form is written in Korean or English, or the Korean or English translated version has been attached.
- [] 서약서에 이의신청인과 대리인, 변호사, 통역인 · 번역인 등(이의신청을 대리 · 조력하거나, 이의신청서 또는 제출 자료를 통역 · 번역을 한 경우 등에만 해당합니다)이 각각 서명하였습니다. Applicant, representative, attorney, interpreter(translator), etc (if applicable) have signed the Declaration.
-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보완을 완료한 후 각 항목에 '✓' 표시합니다.

3. 서명 및 제출 <작성 예시 45쪽 참고>

본인은 「난민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I hereby file an appeal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1) of the Refugee Act.

신청일 Date	년(yyyy) 월(mr	n) 일(dd)
이의신청인 Applicant's Name		(서명 또는 인) (Signature)

법무부장관 귀하 To the MINISTER OF JUSTICE

■ 신청일과 신청인의 성명을 작성(영어로 작성할 경우 대문자로 작성)하고 '서명 또는 인' 란에 서명을 하거나 날인한 후 첨부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이의신청서 작성 예시

불일 이의신청서 작성 예시

• '이의신청서 작성 예시'에 적힌 내용들은 이의신청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므로 참고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서 APPLICATION FOR APPEAL							
1. 이의신청인 인적사항 Applicant's Personal Information							
성(姓) Family Name 명(名) Given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HONG	yyyy/mm/dd						
국적 Nationality	연락처 Contact Information						
REPUBLIC OF KOREA	010-0000-0000						

전자우편 E-mail

ABCD@KOREA.KR

대한민국 내 체류지 Residence Address in Korea

47, GWANMUN-RO, GWACHEON-SI, GYEONGGI-DO

2. 이의신청 대상 Subject of Appeal

이의를 신청하는 처분의 내용을 표시하고 해당 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을 작성하세요.

Check the disposition you are appealing against, and provide the date when you were notified of the disposition.

처분 내용 Disposition	[✓] 난민불인정결정 Non-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 난민인정 취소 Cancellation of refugee status [] 난민인정 철회 Withdrawal of refugee status	처분 통지를 받은 날 (연/월/일) Date when you were notified of the disposition (yyyy/mm/dd)	yyyy/mm/dd
-------------------------	--	---	------------

3. 이의신청 사유 Grounds for Appeal

예시1. 난민불인정결정 사유에 이의가 있는 경우

-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의 '사유'에 적힌 내용 중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①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 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 한 점을 보면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① *하지만, ~ 때문에 ~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은 부당합니다.*
-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의 '사유'에 적힌 내용 중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② 또한, "~ 한 점을 보면 박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② 하지만, ~ 때문에 박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부당합니다.

예시2. 난민면접 절차에 이의가 있는 경우

- 난민면접조서에 적힌 내용 중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yyyy.mm.dd. (면접조서 작성일자) 작성된 난민면접조서 0쪽을 보면,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하지만, ~ 때문에 이러한 난민면접조서에 근거한 난민불인정결정은 부당합니다.

예시3. 난민인정신청 및 난민인정심사 과정에서 주장하지 못한 내용이 있는 경우

■ 주장하지 못한 내용

yyyy.mm.dd. (활동 일시) ~ 에서 (활동 장소) ~ 활동을 하였으며 (활동 내용),

- ~ 때문에 (박해 이유) yyyy.mm.dd. (박해 일시) ~ 에서 (박해 장소) ~ 으로부터 (박해 주체)
- ~ 부당한 처분(박해, 위험)을 받았습니다. (박해 내용)
- 주장하지 못한 사유

난민인정신청을 할 때나 난민인정심사를 받을 때에는 ~ 때문에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시4. 난민면접 이후 출신국의 정세가 악화되었거나 새로운 박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

■ 출신국의 정세 변화 또는 새로운 박해 사건 내용

난민면접 이후, yyyy.mm.dd. (활동 일시) ~ 에서 (활동 장소) ~ 활동을 하였으며 (활동 내용),

- ~ 때문에 (박해 이유) vvvv.mm.dd. (박해 일시) ~ 에서 (박해 장소) ~ 으로부터 (박해 주체)
- ~ 부당한 처분(박해, 위험)을 받았습니다.(또는 받게 될 것이 두렵습니다.) (박해 내용)

4. 소명 자료 제출 Submission of Supporting Materials

- 4.1 귀하는 본 이의신청서와 함께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하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출할 예정입니까?
 - ※ 난민인정 신청 또는 심사, 난민인정 취소 · 철회 사실조사 시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에 제출한 자료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Are you providing or going to provide any new material(s) in support of your appeal?

※ You do not need to submit the ones you have already provided to a local immigration office at the time of your application for refugee status or during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or during investigation concerning cancellation/withdrawal of refugee status.

[] 예 Yes [] 아니오 No.

→ "예"로 답한 경우 4.2에서 4.4까지를 작성하세요.

If "yes", complete from 4.2 to 4.4.

→ "아니오"로 답한 경우 "5. 구두 의견 진술 필요 여부"로 이동하세요.

If "no", go to "5. Oral Hearing".

4.2 제출하거나 제출 예정인 소명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세요. List the supporting material(s) you are providing or going to provide.

연번 No.	자료 유형 (판결문, 사진, 동영상, 언론보도 등) Type (Judicial decisions, photos, videos, news articles, etc.)	작성자 또는 발급자(발급기관) Written by or issued by	작성일자 또는 발급일자(연/월/일) ※현재제출할수없는자료인 경우,제출예정시기 Reporting date or issue date(yyy/mm/dd) ※ State earliest possible date of submission, if not currently available.	내용 요약 Summary of content
1	<i>판결문 00법원</i>)		yyyy/mm/dd	0년의 징역형을 선고
2	사진	00단체 000	yyyy/mm/dd	~ <i>활동을 한 사진</i>
3	동영상	00단체 000	yyyy/mm/dd	~ 활동을 한 영상
4	언론보도	00언론사	yyyy/mm/dd	연번1의 징역형 판결은 부당함
5	난민인정 증명서	000 이민청	yyyy/mm/dd (제출 예정)	신청인과 동일하게 ~ 활동을 한 000이 난민인정결정을 받음

4.3 앞 문항 4.2에서 적은 각각의 소명 자료가 이의신청 사유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상세히 작성하세요. Please describe in detail how each material in 4.2 relates to the grounds for your appeal.

■ 연번 1 자료의 내용

연번 1의 판결문은 ~ 내용으로,

■ 연번 1 자료의 증명 내용

이의신청 사유에서 작성한 내용 중 ~ 부분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연번 2~5의 자료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빠짐없이 작성

- 4.4 앞 문항 4.2에서 적은 각각의 소명 자료를 누구로부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취득하였는지 그 취득 경위와 난민인정 신청 또는 심사, 난민인정 취소 · 철회 사실조사 시 제출하지 못한 사유를 상세히 작성하세요.
 - ※ 현재 제출할 수 없는 소명 자료인 경우 각각의 자료에 대해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를 상세히 작성하세요.

Please describe in detail from whom, when, where, how you obtained each material in 4.2 and why you were unable to provide it at the time of your application for refugee status or during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s or investigation concerning cancellation/withdrawal of refugee status.

- Explain why you are not able to provide each of the material(s), if it is currently unavailable.
- 연번 1 자료의 취득 경위

연번 1의 판결문은 ~ 로부터 (자료를 제공한 주체) yyyy.mm.dd. (자료를 취득한 일자) ~ 에서 (자료를 취득한 장소) ~ 방법으로 (자료를 취득한 방법 / 예시: 직접, 우편, 이메일, SNS 등) 취득하였으며,

- 연번 1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지 못한 사유
 - ~ 때문에 난민인정신청 또는 난민인정심사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 → 연번 2~4의 자료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빠짐없이 작성
- 연번 5 자료를 현재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 연번 5의 난민인정증명서는 ~ 때문에 현재 제출할 수 없으며,
- 연번 5 자료의 취득 계획

yyyy.mm.dd. (자료를 언제 취득할 예정인지 그 일자) ~ 방법으로 (자료를 어떻게 취득할 예정인지 그 방법) 취득하여 제출할 예정입니다.

5. 구두 의견 진술 필요 여부 Oral Hearing

5.1 귀하는 난민위원회의 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이의신청과 관련한 의견을 진술 (이하 "구두의견진술"이라 함)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Do you need to appear at the Refugee Committee's meeting to make statements regarding your appeal (hereinafter referred to as "oral hearing")?

[] 예 Yes [] 아니오 No

→ "예"로 답한 경우 5.2를 작성하세요.

If "yes", complete 5.2.

- 5.2 구두의견진술이 필요한 이유를 상세히 작성하세요. Please describe why you need an oral hearing.
- 핵심적인 주장과 제출 자료
 - 3. 이의신청 사유에서 작성한 내용 중 ~ 부분과 이를 증명하는 4.2의 연번 0 제출 자료는
- 난민불인정결정의 근거가 된 부분 중 부당함을 소명하는 부분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의 '사유'에 적힌 ~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부분 (또는 난민면접조서 0쪽의 "~" 라고 기재된 부분)이 부당함을 소명하는 핵심적인 주장과 자료로,
- **난민불인정결정 과정에서 위의 주장과 자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난민불인정결정을 할 때에는 ~ 때문에 이러한 주장과 자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구두 진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 따라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주장과 자료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난민위원회 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6.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통지, 통보 및 송달 Notice, Notification and Service through an Electronic Civil Petition Window

이의신청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 이의신청 결정통지서 등 이의신청과 관련한 각종 서류에 대한 통지, 통보 및 송달을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받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Do you agree to receive notices, notifications and services through an Electronic Civil Petition Window regarding your appeal (examples: Notice on Extension of Review Period of Appeal, notice of decision on your appeal, etc.)?

[] 예 Yes [] 아니오 No

7. 서약 Declaration

◆ 이의신청인 본인 서약 Declaration by the applicant

나는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I declare that:

▶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으로 인정되거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경우 「난민법」 제47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난민으로 인정된 후에도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I understand that if I become a recognized refugee or obtain a humanitarian stay permit after submitting false documents, making false statements, or concealing facts, I may be subjected to punish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47 of the Refugee Act, and that if such fact is found after I have been recognized as a refugee, my refugee status may be cancel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2(1) of the Refugee Act.

▶이 신청서에 적힌 유의사항과 모든 질문을 완전히 이해한 후 관련 질문에 빠짐없이 사실대로 작성하였습니다.

I filled out all of the information and questions in this form and affirm that the provided information is complete, correct and current in every detail.

dg Name HONG GIL DONG

(서명 또는 인) HONG GILSi和MG

일자(연/월/일) Date (yyyy/mm/dd)

yyyy. mm. dd.

- ◆ 대리인, 변호사, 통역인·변역인 등 서약 Declaration by representative, attorney, interpreter·translator, etc.
 - ※ 이의신청을 대리 또는 조력하거나, 이의신청서 또는 제출 자료의 통역 · 번역 등을 한 경우에만 이 항목을 작성합니다.

Fill out the section below only if you have assisted, or acted on behalf of the applicant in filing this application, or if you have interpreted/translated this form or related materials.

이의신청인과 어떤 관계인지 표시하세요.

I have assisted (acted on behalf of the applicant) in completing this form as:

[✓] 변호사 Att	,	[]	통역인	· · 번역인	Inte	rpreter	(transl	lator)	, ,
[] 그 밖의 사	람 (이의신청인과의	관계:) Other (GIVE	e detail	s of rel	ationship :)
명 Name	KIM BYE	ON	НО	생년월일 Da	ate of	Birth		yyyy/n	nm/dd

성명 Name	KIM BYEON HO	생년월일 Date of Birth	yyyy/mm/dd
연락처 Contact Information	010-0000-0000	전자우편 E-mail	EFGH@KOREA.KR
국적 Nationality <i>REPU</i>	JBLIC OF KOREA	소속(해당될 경우에만 기	재) Organization (If applicable) Law Firm 0000

대한민국 내 주소 또는 체류지 Residence Address in Korea

151, MOKDONGDONG-RO, YANGCHEON-GU, SEOUL

본인은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I declare that:

▶ 나는 이의신청인 (HONG GIL DONG) 의 요청으로 이의신청을 대리·조력하거나 이의신청서 또는 제출 자료의 통역·번역 등을 하였고, 이의신청인이 신청서의 질문을 완전히 이해한 후 답변한 사실과 작성된 내용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고 위 서약에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며,

I certify that I have assisted/acted on behalf of the applicant in filing this application form or interpreted/ translated this application form or supporting materials at the request of (*HONG GIL DONG*), and that he/she has fully understood the content of this form, given answers, and approved them before signing the declaration above.

▶ 이의신청인의 동의 없이 이의신청인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를 출신국에 제공할 경우 「난민법」 제4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I understand that if I disclose any personal information, pictures, etc. by which the applicant is specifically identifiable or divulge such things to other persons or provide the country of origin with any information regarding the appeal without the consent of the applicant, I may be subjected to punish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47 of the Refugee Act.

8. 확인 사항 Checklist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Please check the following.

- [<] 신청서 각 항목에 적힌 작성방법 등을 확인하고 모든 관련 항목을 기재하였습니다. I have read note and instructions in the form and completed all relevant parts.
- [夕] 신청서를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거나, 번역본(한국어 또는 영어)을 첨부하였습니다. The application form is written in Korean or English, or the Korean or English translated version has been attached.
- [<] 서약서에 이의신청인과 대리인, 변호사, 통역인 · 번역인 등(이의신청을 대리 · 조력하거나, 이의신청서 또는 제출 자료를 통역 · 번역을 한 경우 등에만 해당합니다)이 각각 서명하였습니다. Applicant, representative, attorney, interpreter(translator), etc (if applicable) have signed the Declaration.

본인은 「난민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I hereby file an appeal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1) of the Refugee Act.

ଧର୍ଷଧି Date yyyyଧ୍ୟ(yyyy) mm ଧ୍ର(mm) dd ହ(dd) old = 0 ମଧ୍ୟ ମଧ୍ୟ କଥା old = 0 ନ୍ୟାର୍ଥ ନେ ମଧ୍ୟ କଥା old = 0 ନେ ମଧ୍ୟ କଥା ନେ ମଧ୍ୟ କଥା

법무부장관 귀하 To the MINISTER OF JUSTICE



